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47
----------	-----

2017. 7. 14. (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임헌경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7년 6월 26일

다. 회부일자: 2017년 6월 28일

라. 상정일자: 2017년 7월 5일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임헌경 의원)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안 제4조)
-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미세먼지 측정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안 제7조)
- 선도·연구학교 지정 운영(안 제8조)
- 예산지원(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 최근 자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교육부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 불 때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대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학교 교육현장에서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미세먼지 대응수단 강화 및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현장에서의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 시행은 타 시·도의 모델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됨.

○ 다만,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제7조의 미세먼지 점검과 점검결과 시설의 보안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과 제8조의 선도·연구학교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청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충청북도 내 유아·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μ m 이하인 먼지
 -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μ m 이하인 먼지
2.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어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미세먼지 환경기준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유치원장, 학교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
3.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4.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방안
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점검 등) ① 교육의 장은 연 2회 이상 교사(校舍)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등록된 공기 질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측정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의 전 교육기관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점검하고 교육기관 구성원 간에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결과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등 공기 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체육관과 간이체육실 등 실외수업 대체 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선도·연구학교 지정 운영)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선도·연구학교(이하 “선도·연구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선도·연구학교는 특성화된 미세먼지 관리 및 대처 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선도·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제5조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mu\text{g}/\text{m}^3$)	100	모든 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폼알데하이드($\mu\text{g}/\text{m}^3$)	100		
총부유세균(CFU/ m^3)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이산화질소(ppm)	0.05		
라돈(pCi/L)	4.0	지하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mu\text{g}/\text{m}^3$)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개/cc)	0.01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진드기(마리/ m^2)	100	보건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제정에 따른 미세먼지 추가 측정 예산 반영
- 관련: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1422(2017.5.25.)호

2. 비용 발생 요인

- 미세먼지 추가 측정에 따른 용역비·출장비

3. 관련조문(안)

-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제6조

제6조(점검 등)

- ①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교사(校舍)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등록된 공기 질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측정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 ④ 생략

4. 비용 추계결과

가. 1안

- (1) 추계의 전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측정대행업 비용 및 「201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 관내여비 적용

(2)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예산 추계		연도별 예산 추계				
산출기초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총 계	329,724	329,724	339,615	349,802	360,295	1,379,436
1. 교사(校舎)내 공기질 측정 용역비	309,084	309,084	318,356	327,906	337,743	1,293,089
가 599,000원× 516교=	309,084	309,084	318,356	327,906	337,743	1,293,089
2. 미세먼지 측정 출장비	20,640	20,640	21,259	21,896	22,552	86,347
가.20,000원× 516교×2명×1회=	20,640	20,640	21,259	21,896	22,552	86,347

※ 2017년 이후 물가상승분 3%를 적용 추계

(3)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나. 2안

(1) 추계의 전제: 「201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관내여비 적용

(2)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출장비 추계		연도별 출장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 교사(校舎)내 환경위생 측정 출장비	41,280	41,280	42,518	43,793	45,106	172,697
가.20,000원× 516교×2명×2회=	41,280	41,280	42,518	43,793	45,106	172,697

※ 2017년 이후 물가상승분 3%를 적용 추계

(3)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4) 문제점: 인력부족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교육국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계	
세 출	329,724	339,615	349,802	360,295	1,379,436	
용역비	329,724	339,615	349,802	360,295	1,379,436	
재원 조달	329,724	339,615	349,802	360,295	1,379,436	
의존 재원	소 계	329,724	339,615	349,802	360,295	1,379,436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329,724	339,615	349,802	360,295	1,379,436
	특별교부금					0
자체 수입	소 계					0
	자체수입					0
지방채					0	
기 금					0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0	